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4-107
--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8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소득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상황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보험료 지원 및 지원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(안 제2조)

- 건강보험료 가입제외자인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보험료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, 보험료 지원대상자인 저소득주민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

나. 제2조 개정에 따른 지원대상 조문 정리(안 제3조)

다. 만 나이정비에 따른 ‘만’ 표시 삭제(안 제3조제1호)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비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(수급권자)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(보험료)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8조(장기요양보험료의징수)
- 2) 「행정기본법」 제7조의2(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) 및 「민법」 제158조(나이의 계산과 표시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4. 7. 11. ~ 7. 31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
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저소득주민”이란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에 따른
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에 따른 국민건강
보험료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8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(이하“보험
료”라 한다) 부과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를 말
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(이하
“보험료”라 한다)”를 “보험료”로, “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「국민건강보험법
시행령」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
국민건강보험공단”을 “국민건강보험공단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
“만 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
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추계 대상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동행국 장애인사회보장과 이서백
연 락 처	02-3153-6457